

시 민

문서번호	기전과-14504
결재일자	2019.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기전과장	
한상원	12/26 서수일	
협조	주무관	노민영

**교통안전시설물(신호, 표지)
발생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2019. 12.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발생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우리 사업소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안전시설물 발생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지원)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양여 할 수 있다.)

□ 불용물품 현황

- 대상물품 :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및 표지)
- 발생기간 : 2019. 1. ~ 2019. 12.
- 종 류

연번	물 품 명	수 량	상 태	비 고
1	제어기	45	재사용 불가	신호
2	차량등 1면4색	8	재사용 불가	신호
3	차량등 1면3색	32	재사용 불가	신호
4	보행등 1면2색	23	재사용 불가	신호
5	경보등 1면2색(황색)	15	재사용 불가	신호
6	잔여표시기(도형형)	29	재사용 불가	신호
7	잔여표시기(숫자형)	18	재사용 불가	신호
8	음향신호기(본체)	239	재사용 불가	신호
9	음향신호기(버튼)	184	재사용 불가	신호
10	보행자작동신호기(버튼)	72	재사용 불가	신호
11	차량신호등 모듈	278	재사용 불가	신호
12	보행자신호등 모듈	97	재사용 불가	신호
13	교통안전표지	32	재사용 불가	표지
14	냉장고	3	재사용 불가	기타

□ 불용결정 사유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흐름개선 공사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한 발생품은 노후 및 고장으로 파손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불용 결정처리하고자 함.

□ 불용품 처분계획

- 추진일정
 - 불용물품 처리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중
- 조치계획
 - 자원순환과에 불용물품 처리 요청
 - 근거: 불용물품 무상양여 업무매뉴얼 '자원순환과-10276(2018.6.28.)'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관리전환
 - ※ SR(seoul resource)센터 : 서울지역 폐소형 가전을 소재별로 분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36
 - 연락처 : 02-2244-5133

붙임 불용 결정 통보서 1부. 끝.